

중국 지재권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실무 가이드북

-출원 절차-



특허청

본 가이드북은 중국의 4대 지재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출원 절차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재권 제도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중요한 경우 중국 용어를 그대로 표기하고 별도의 설명을 덧붙였으며, 기타 용어들은 이해상의 편의를 위하여 상응하는 한국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I. 중국 지재권 개요 02

II. 전리(专利) 출원

- 정의 및 관할 관청 03
- 전리출원 절차 04
- 유용한 제도의 활용 10
- 중국의 심사촉진 제도 12

III. 상표(商标) 출원

- 동향 및 관할 관청 14
- 상표출원 전 준비사항 15
- 상표출원 절차 17
- 이의신청 제도 18
- 불사용취소신청 제도 19

※ 별첨 1. 중국의 4대 지재권 요약

※ 별첨 2. KIPRIS를 통한 중국 전리검색

※ 별첨 3. 중국 상표검색사이트에서 유사상표 검색

1. 중국 지재권 개요

지재권의 의미

- 4대 지재권은 크게 전리권(专利权) 과 상표권(商标权) 으로 구분되며, 전리권은 발명전리, 실용신형전리, 외관설계전리로 구분
- 지재권은 권리자의 독점배타적인 **속지주의의 권리**이므로, **안정적인 중국시장 진입 및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중국 지재권 확보가 필수**

지재권의 법령 체계

- **전리법(专利法, 2008년 3차 개정)**
발명·실용신형·외관설계에 관한 출원·심사·등록·무효·관리·보호 등의 내용을 규정
- **전리법 4차 개정안 주요내용(개정 진행 중)**
 - 외관설계의 존속기간을 출원일로부터 15년으로 연장(기존 10년)
 - 악의적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도입(손해액의 3배)
 - 부분디자인(局部外观设计) 인정 등
- **전리법실시세칙(专利法实施细则, 2010년 개정)**
전리법과 함께 각종 절차의 처리 방법을 규정함
- **상표법(商标法, 2013년 3차 개정법)**
상표의 출원, 심사, 등록, 갱신(续展), 무효, 관리 보호 등의 내용을 규정함
- **상표법실시조례(专利法实施条例, 2014년 개정)**
상표법과 함께 각종 절차의 처리 방법을 규정함



II. 전리(专利) 출원

정의 및 관할 관청

전리의 정의

- 전리는 발명전리, 실용신형전리 및 외관설계전리로 구분됨
- 발명전리(한국의 '발명특허'에 해당)는 제품, 방법 또는 그 개선에 대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보호
- 실용신형전리(한국의 '실용신안등록'에 해당)는 산업방법으로 제조된 형상과 구조를 구비한 제품을 보호
- 외관설계전리(한국의 '디자인등록'에 해당)는 제품의 형상, 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 도안의 결합이 풍부한 미감을 나타내고 공업상 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을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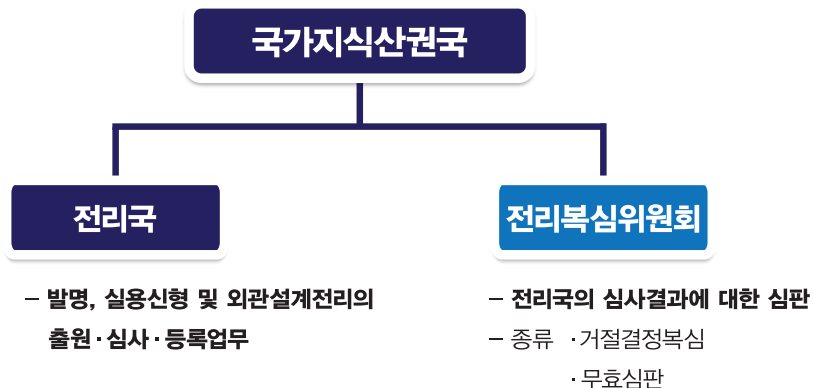
- 실용신형전리는 발명전리의 보호대상 중 **제품**에 대한 것으로서, **형상과 구조를 갖는 것만 허용**
- 실용신형전리는 발명전리에 비하여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짧으나, **형식심사만 통과하면 실질심사 없이 바로 등록되고, 바로 권리행사 가능**

실용신형전리 출원의 적극 활용 필요!!

관할 관청

구분	발명	실용
존속기간	20년	10년
심사	O	X
권리행사	동일하게 가능	

국가지식산업진흥원의 전리국에서 발명전리, 실용신형전리 및 디자인전리 출원·심사·등록업무를 관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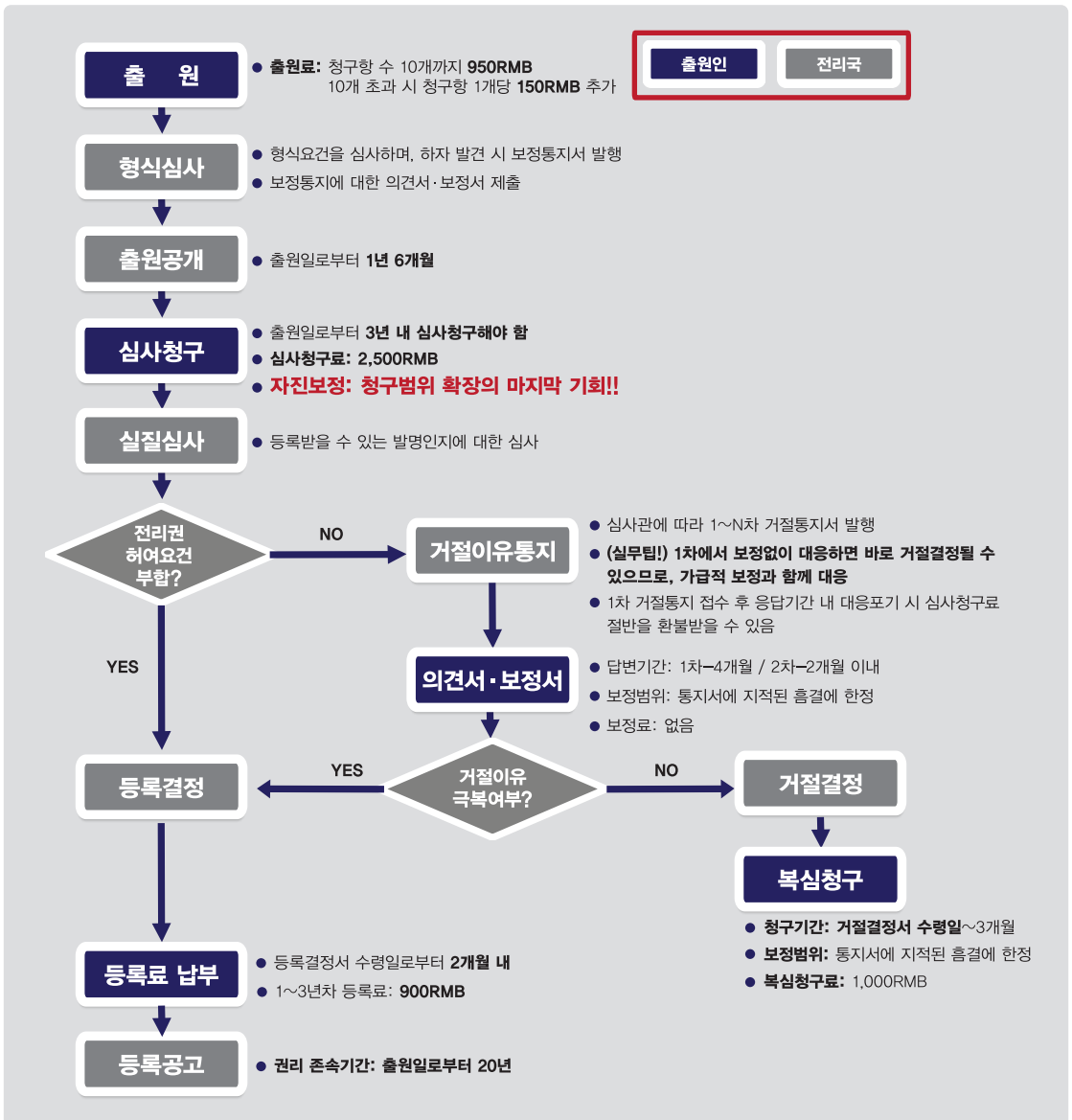
전리출원 절차

- **발명전리:** 발명의 실체에 대한 심사(실질심사)를 거쳐 등록
- **실용신형 및 외관설계전리:**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형식심사)하여 등록

- **형식심사:** 심사관이 출원서 등의 기재사항 등 형식적 요건의 흠결에 대해 심사하는 행위
- **실질심사:** 심사관이 발명에 대한 실질적인 흠결 유무를 자세히 심사하는 행위

발명전리출원 절차

- **심사기간:** 심사청구일로부터 등록결정 시까지 약 2~3년 소요





발명전리출원 시 주의사항

전리출원 전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 출원 전 **기술이 공개된**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성이 상실되어 전리등록이 불가능**
- 공지에외 규정을 통해 본인의 공개행위로 인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공지에외 규정의 적용 범위*가 매우 좁음**

*중국의 공지에외 적용 요건

- 대상
 - ①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박람회 출품
 - ② 실시세칙에서 규정한 학술회 등에서 발표
 - ③ 출원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누설
- 절차 **공지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출원**
(외관설계전리도 동일)
- ⚠ 한국·미국·일본은 사유에 관계없이 **본인의 공지행위 후 1년 이내에 출원할 경우에는 공지에외 규정을 인정함**

출원 전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

기간 준수가 중요!!

- **파리조약 우선권주장출원**
 - 한국출원 후 동일한 발명을 중국에 출원하는 경우, 한국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출원을 하면 한국출원일을 기준으로 신규성, 진보성 등을 판단
 - 우선일(한국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중국출원해야!!
- **PCT를 통한 중국 국내단계 진입**
 - 한국특허청에 PCT 출원을 하면 해당 출원일에 중국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
 - ※ 중국어 번역문* 제출 및 중국에서의 별도 심사는 필요함
 - * 우선일(한국출원일)로부터 **30개월**(2개월 연장 가능) 내에 번역문을 제출해야!!

청구범위를 전리법 규정에 적합하게 기재할 것

- 독립항은 기술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한 기술수단**을 기재해야!!
- 청구항 발명이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될 것!!**
 -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보다 청구항의 기재범위가 넓으면 거절**
- 청구항은 **명확하고 간결할 것!!**
 - ‘고온’, ‘특히’, ‘약’, ‘예를 들어’ 등의 사용은 불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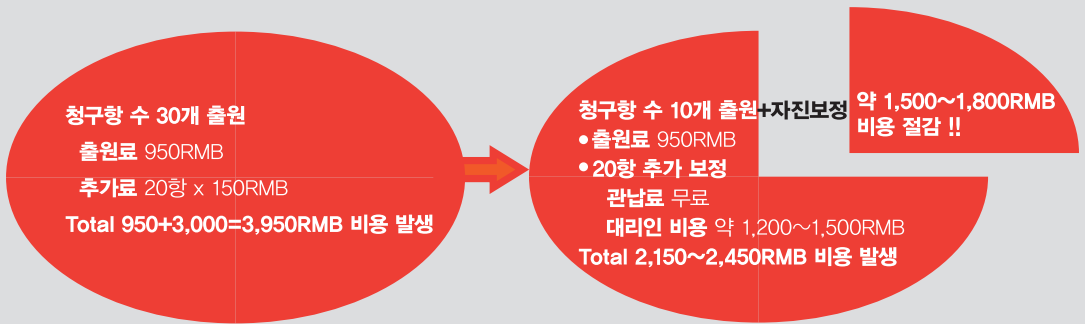
청구항 10개 초과 시 출원료 증가

- 출원료는 청구항 수 **10개까지 정액**(950RMB, 약 15만원)

10개 초과 시 추가료 발생 (추가료: 150RMB(약 2만 5천원) / 청구항 1항)

- 청구항을 10개 이하로 출원 후 자진보정으로 청구항을 추가하면 출원료 절감 가능**
(단, 대리인 비용 고려, 청구항 20개 이상일 때 의미 있음)

<자진보정 활용 사례>



정확한 번역 필요

- 중국어로 출원하는 것이 원칙(PCT 출원 시 중국어 번역문 제출 필요)

한국어로 작성된 명세서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오역될 우려가 높으므로, 신뢰도가 높고 한국어가 능통한 변리사를 보유한 대리인 이용

<잘못된 번역 예>

- 원문: 마그네슘을 포함하는 산화영역(an oxidation region containing magnesium)

잘못된 번역: 包含镁的氧化物区域(마그네슘을 포함하는 산화물영역)

정확한 번역: 包含镁的氧化区域(마그네슘을 포함하는 산화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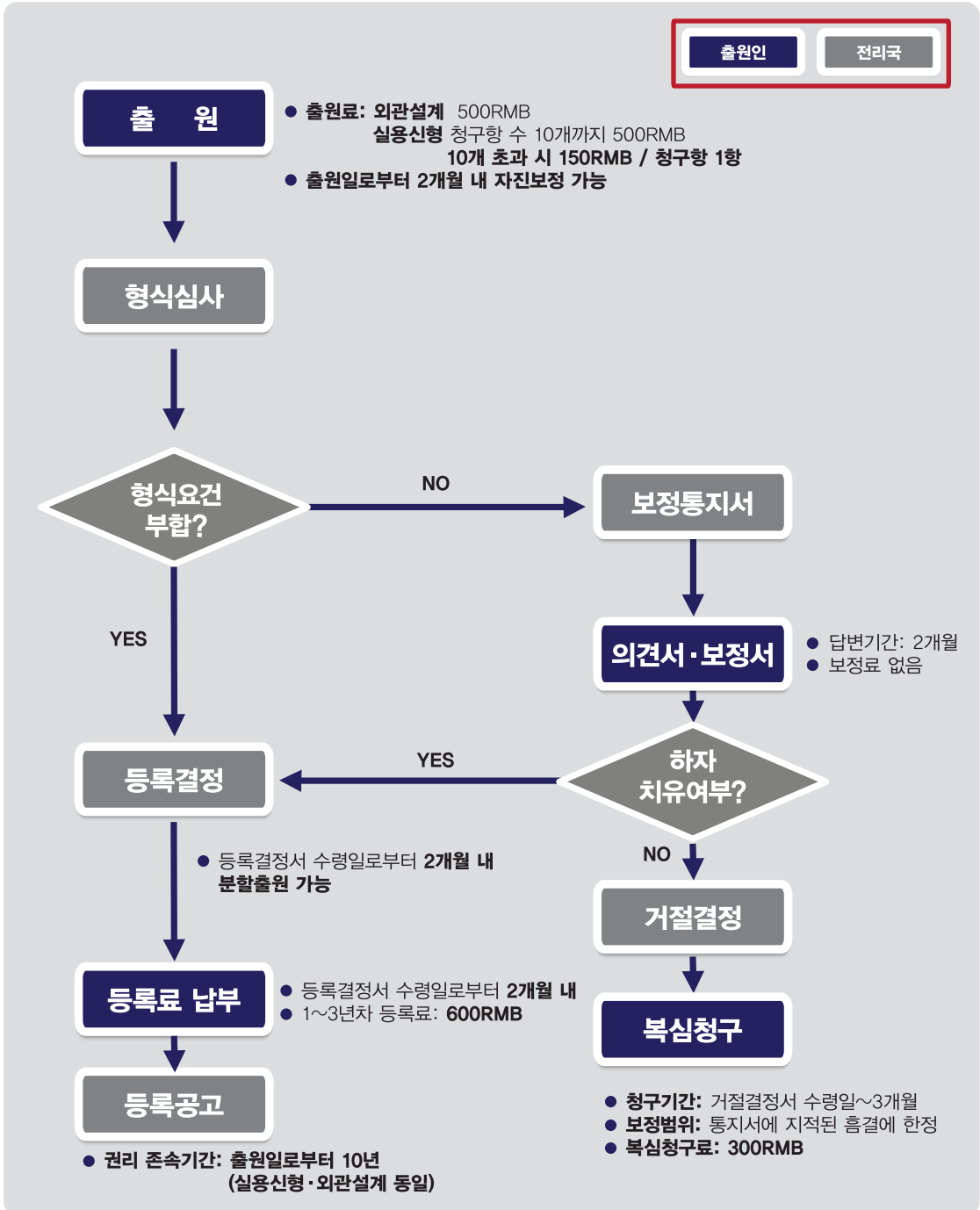
- 원문: 폭(a width)

잘못된 번역: 厚度w ('두께' 의 의미)

정확한 번역: 宽度w ('폭' 의 의미)


실용신형·외관설계전리출원 절차

- 심사기간: 출원일로부터 등록결정 시까지 약 4~8개월 소요
(심사관의 실질심사 없이 형식심사 후 등록)



실용신형전리출원 시 주의사항

- 실용신형전리는 실질심사가 없다는 것 외에는 발명전리와 출원 절차가 실질적으로 동일

 발명전리출원 시 주의사항(p. 5~6) 참조!!

실용신형전리출원의 형식심사는 형식적 요건 및 명백한 신규성을 심사하며, 최근 신규성 거절이유의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임


→ 권리범위가 너무 넓으면 거절이유 발생 가능성이 높고, 등록 후에는 무효가능성이 높음!!

외관설계전리출원 시 주의사항

출원 전 공지되지 않도록 주의

- 중국에서 디자인의 공지에외 규정(p. 6 '중국의 공지에외 적용 요건' 참조)은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출원 전 공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정확한 도면 표시 필요

- 선(음영선, 지시선, 점선, 중심선, 쇄선 등)으로 디자인의 형상을 표현하는 것은 안됨
- 부분디자인은 허용되지 않음
 -  우선권주장출원 시 부분디자인 이외의 부분을 나타내는 점선은 실선으로 수정하여 출원
 - 점선을 실선으로 보정하는 것은 불허(점선 삭제 보정만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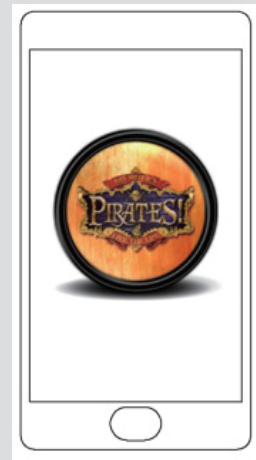
- GUI 디자인은 도면에 완전한 물품을 도시해야 함

※ GUI(Graphic User Interface):
사용자가 컴퓨터와 정보를 교환할 때, 마우스를 이용하여 그래픽(아이콘 이미지)을 통해 작업할 수 있는 환경

〈부적합한 사례〉



〈적합한 사례〉





외관설계의 종류

- **유사외관설계(相似外观设计, 법 32, 세칙 35.1)**
 - 동일물품에 대한 둘 이상의 유사한 외관설계를 하나의 출원으로 신청
 - i) 출원 시 기본디자인이 지정되어야 하고,
 - ii) 기타 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유사해야 하며,
 - iii) 10개를 초과할 수 없음

- **한 벌 물품 외관설계(成套产品, 법 31, 세칙 35.2)**
 - 중국에서 한 벌 물품으로 하나의 출원으로 신청
 - i) 상품 대분류가 동일하고,
 - ii) 습관적으로 동시에 판매 또는 사용되는 물품이며,
 - iii) 디자인 스타일이 동일해야 함



유용한 제도의 활용

보정 제도의 활용

- **보정:** 출원 명세서 등의 기재 내용에 흠결이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치유하는 절차
 👉 **자진보정과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으로 구별**

자진보정과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 비교

구분	자진보정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
범위	• 원 명세서 또는 청구범위	• 원 명세서 또는 청구범위 내로서, 통지서에서 지적한 흠결 해소보정에 한정
기간	• 실질심사 청구 시 • 실질심사단계 진입통지서 수령일~3개월 내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답변 기간 내 (1차: 4개월 / 2차: 2개월)
예	허용 예 1) 청구항 수 증가 2) 청구항의 기술범위 확장 3) 청구항의 기술방안 변경	불허용 예 1) 청구항 범위 확장 2) 청구항 발명과 무관한 발명 추가 3) 청구항에 없는 새로운 독립항 추가

※ 자진보정은 청구범위 확장의 마지막 기회로 적극 활용할 것 !!

분할출원 제도의 장점

- 분할출원: 하나의 출원에 2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 일부를 분할하여 출원하는 제도
 👉 일반적으로 심사관의 거절에 대비하여 **등록 가능한 발명과 그렇지 않은 발명**으로 분할하는 전략으로 활용 가능

분할출원 활용 사례



- 일부 청구항 등록가능 시, 등록가능한 청구항의 권리 확보를 위해 분할출원하고, 거절된 청구항은 불복
- 거절결정 시, 다시 심사 받기 위해 분할출원
- 등록결정 시, 더 넓은 권리 확보를 위해 분할출원

※ **분할출원 가능 기간:** 원 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이고,
 i)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답변기간 내(1차: 4개월 / 2차: 2개월)
 ii) 등록결정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 내
 iii) 거절결정서 수령일로부터 3개월 내
 iv) 복심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기간 내

※ **분할출원 범위:** 원 명세서 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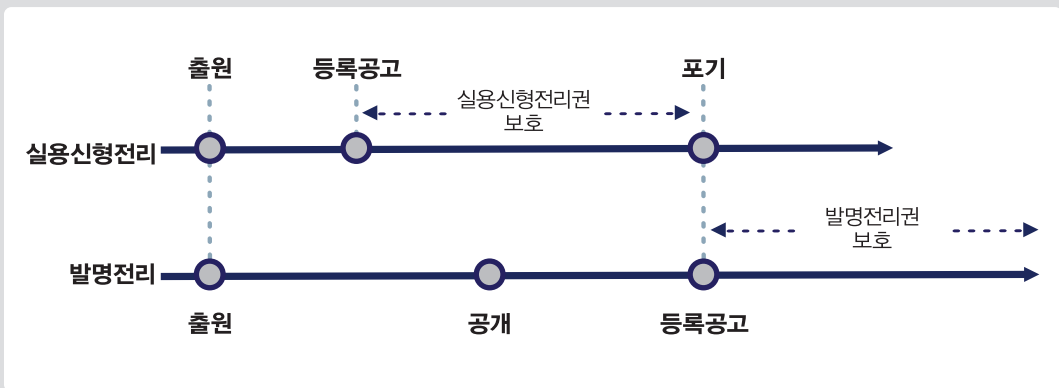
이중출원 제도의 적극적 활용!

○ 이중출원의 의의

- 동일 기술에 대해 같은 날로 실용신형 및 발명전리를 출원하는 제도

○ 활용 전략

- 실용신형전리권을 먼저 확보할 수 있고, 발명전리까지 등록결정된 경우에 실용신형전리권을 포기하여 발명전리 등록



- 신속한 등록이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는 이중출원을 통해 실용신형전리권을 먼저 확보함으로써, 조기에 권리 행사하는 전략이 효율적임

○ 실용신형전리출원의 이점

- **신속한 권리 획득** 형식심사 후 실질심사 없이 등록결정(출원 후 4~6개월)되므로 조기에 권리를 획득할 수 있음
- **권리행사 용이** 등록받으면 바로 권리행사가 가능
권리행사에 발명전리와 차이 없음(기술평가보고서 필요)
- **충분한 보호기간** 존속기간이 출원일~10년으로 발명전리보다 짧으나, 조기실시가 필요하고 기술수명 사이클이 짧은 기술에 유용

○ 주의사항!!

- PCT로 중국출원 시 발명 또는 실용신형전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므로 **이중출원 불가능**



따라서, 이중출원 예정 시에는 **PCT출원보다는 직접 출원을 이용해야!!**

중국의 심사촉진 제도

- 심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조기에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써, **우선심사제도, PPH, PCT-PPH** 등이 있음
- 공개된 출원만 심사에 착수되므로, 심사촉진 제도 이용 시 **조기공개*** 필요

* **조기공개**: 출원공개시기 전에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출원을 조기에 공개시키는 제도
(통상적인 출원공개시기: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 심사 소요기간

	우선심사	일반심사
소요기간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 거절이유통지서 발행 1년 내 심사 종결	심사청구일로부터 2~3년

○ 우선심사 제도

-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출원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심사해 주는 제도
※ 2017.8.1. 개정: 우선심사 대상을 6개로 확대하고, 외국인에게 우선심사 허용

*우선심사 대상

- ①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신세대 정보기술, 생물,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재료, 신에너지 자동차 및 지능 제조(IM) 등 국가 중점 발전 산업에 관련된 출원
- ② 각성 및 구역 설정된 시급 인민정부가 중점 장려하는 산업에 관련된 출원
- ③ 인터넷,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영역 및 기술 또는 제품의 업데이트 속도증가에 관련된 출원
- ④ 전리신청인 또는 복심청구인이 이미 실시준비 또는 실시를 시작하였거나, 타인이 현재 그 발명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것
- ⑤ 동일한 주제로 우선 중국에 출원하고, 타 국가나 지역에 출원한 중국 최초 출원
- ⑥ 기타 국익 또는 공익에 대해 중대한 의의를 가져 우선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외국인이 이용 가능한 우선심사 대상은 극히 제한적 → **PPH 제도를 이용할 것**

○ 한·중 PPH

- PPH는 한·중 양국에 공통 출원하고, 한국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심사를 받은 경우, 중국에서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

○ PCT-PPH

- PCT-PPH는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등록가능 의견 또는 먼저 심사된 1국에서 등록가능 의견을 받은 경우, 중국에서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





PPH 제도(PPH, PCT-PPH) 이용의 장점

- i) 조기에 심사받을 수 있어, 등록까지의 **기간 단축 가능**
- ii) 한국 심사결과를 활용하므로, **등록가능성 향상 및 거절이유 대응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절감 가능**
- iii) **우선심사 신청은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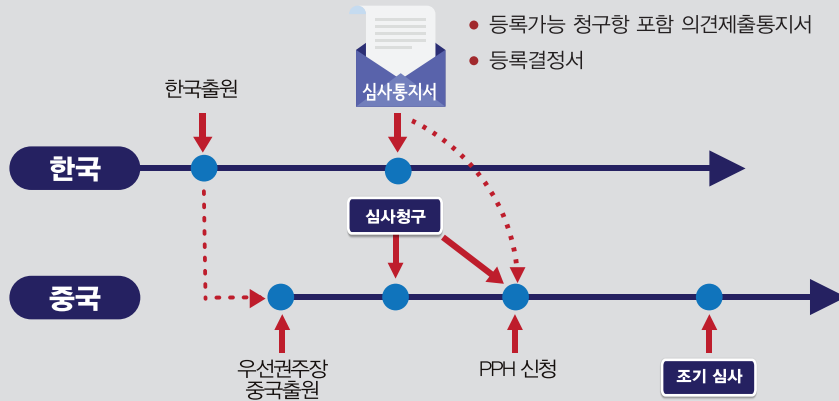
신청 대상

- i) 한국출원 또는 PCT 출원과 **출원일 또는 우선일이 동일할 것**
(한국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출원**하면 됨)
- ii) 한국 심사통지서,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특허가능한 청구항**이 있을 것
(의견제출통지서, 등록결정서, 긍정적 보고서)
- iii) **한국 또는 PCT 출원의 특허가능한 청구항보다 좁거나 동일할 것**
- iv) **심사청구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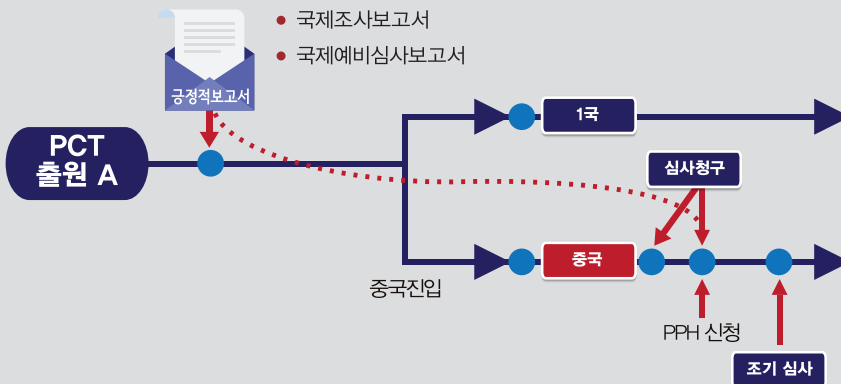
제출서류

심사통지서 및 번역문, 한국의 청구항 및 번역문, 청구항 대응 관계표

한·중 PPH 신청절차



PCT-PPH 신청절차



III. 상표(商标) 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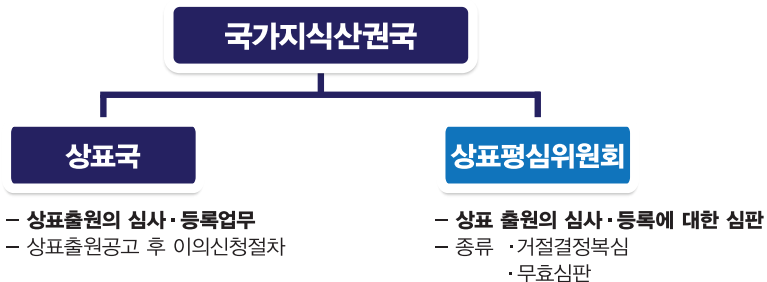
- 한류 및 IT 기술 발달로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는 계속 증가 추세
- 기존 상표 브로커뿐만 아니라 연간 상표출원 800만 건(18년 예상)에 달하는 상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급증으로, 우리 기업 상표가 무단 선점되는 사례 또한 증가 추세
- 무단 선점된 경우, 중국 내 신규사업 기회 지연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므로, 사업준비단계에서부터 중국 상표출원은 필수!!

동향 및 관할 관청

동향

- **최근 3년간 상표 출원량 급증: 평균 증가율 30~50%**
287만 건(15년)→336만 건(16년)→558만 건(17년) (2018년 800만 건 돌파 예상)
- **상표분쟁 급증 및 손해배상금 고액화 추세**
상표분쟁: 27,185건(2016년)→37,946건(2017년) (39.5%↑)
평균 손해배상액: 63만 위안(2015년)→233만 위안(2016년, 약 4억 원) (276%↑)
- **지재권 보호정책 강화**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일정한 영향력 있는 상품 명칭, 포장 등 무단사용 금지
링크삽입 등 인터넷 상의 부정경쟁행위 신설 등
 - 전자상거래법 제정
타오바오 등 입점 시 상품판매업자도 등기
상표권 침해 발견 시 플랫폼 사업자와 공동책임

관할 관청



- 상표업무를 종전의 공상관리국에서 **국가지식산업국**으로 이관 (2018년 3월,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국무원 기구 개편)

상표출원 전 준비사항

상품 선택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선택



브랜드 네이밍

선택한 상품에 사용할 좋은 상표 만들기




유사상표 검색

내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검색하기



상표출원

상품 선택

- 중국 '유사상품·서비스 분류표'에 규정된 상품류 및 해당 류에 속하는 상품 중 출원상표로 보호받고 싶은 상품 지정
- **현행 상품·서비스류 구분**
중국의 현행 '유사상품·서비스 분류표'는 상품 34개류(제1~34류)와 서비스 11개류(제35~45류)로 구성
 출원 시 상품류 및 그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 지정
- **상품류 지정 시 유의사항**
중국은 한국과 달리 개별상품에 대한 도매, 소매업을 인정 않으므로, **개별 상품별로 상표출원해야 상표권 보호 가능**

한국의 경우, 인터넷 패션 쇼핑몰 운영 업자는 다른 상품류에 속하는 선글라스, 가방, 의류 등을 각각 출원하지 않고, 제35류*에 '선글라스 소매업, 가방 소매업, 의류 소매업'으로 지정·출원 하되 해당 제품들에 대한 상표권 보호가 가능함

중국은 선글라스, 가방, 의류를 각각 출원해야 함

* 제35류: 광고업; 사업관리업; 기업경영업; 사무처리업; 각종 상품의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



브랜드 네이밍

좋은 상표란?

- **제품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발음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고, 좋은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브랜드가 좋은 상표
이러한 요소들이 잘 조화될 때 상표에 **소비자가 선호하는 토털 이미지**가 형성
👉 성공적인 브랜드 네이밍!!

❖ 언어별 브랜드 네이밍 효과

- 중문 상표: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하고 발음할 수 있음
- 영문 상표: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인식되어 제품 이미지 제고 향상
- 한글 상표: 문자가 아닌 도형으로 인식되어 등록가능성 높으나, 소비자에게 인식되기 어려움

※ 중국어 브랜드 네이밍의 중요성

- 중국에 출원하는 상표는 중국 소비자의 정서적 측면을 고려할 때, 한글이나 영문 상표보다는 **중국어 상표가 마케팅에 효율적임**
👉 중국에서의 성공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중국어 브랜드 네이밍이 중요!!

● 중국어 브랜드 네이밍의 성공사례

- 可口可乐: '코카콜라'의 중국어 브랜드로, '커코우커러'로 발음되고 '입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라는 의미
- 家乐福: '까르푸'의 중국어 브랜드, '찌아러푸'로 발음되고, '가정에 즐거움과 복이 있다'라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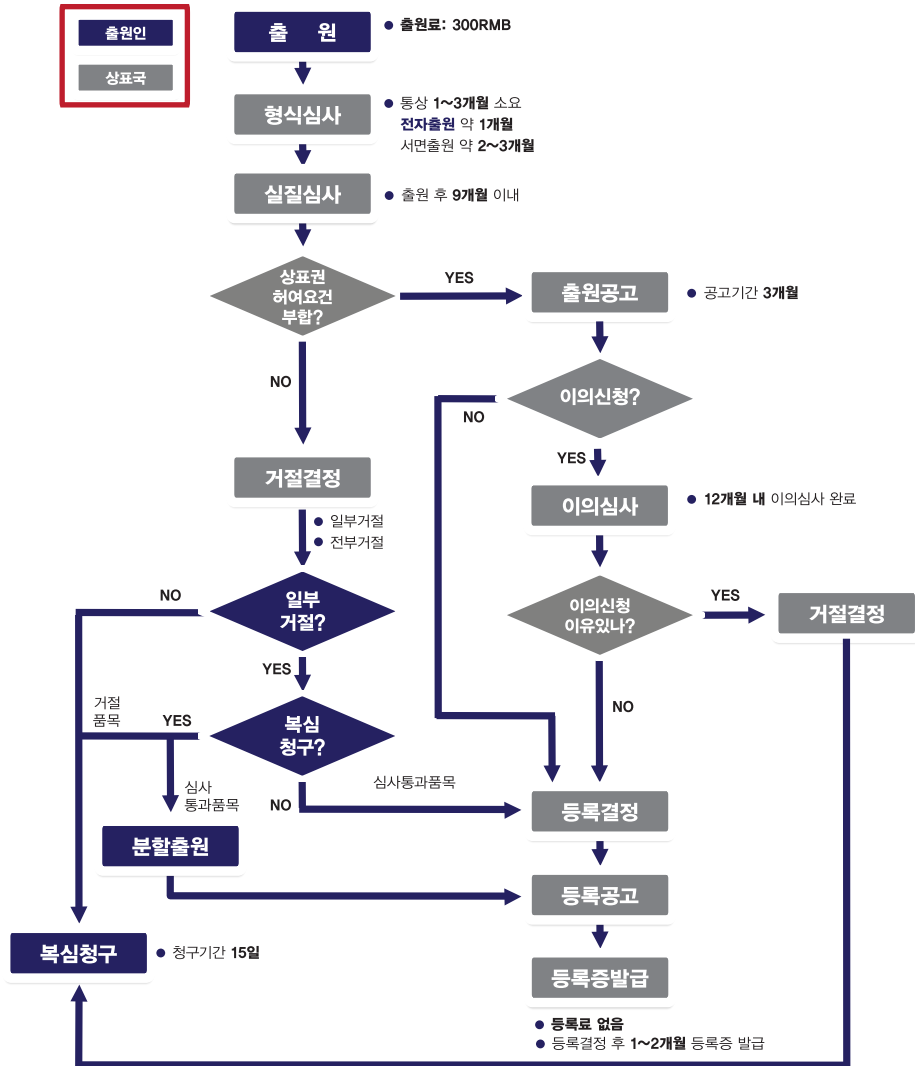
유사상표 검색

-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존재하는지 검색해야 출원상표의 등록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문자(중국어와 영어 등)로 된 상표는 중국 상표검색사이트(<http://sbj.saic.gov.cn>)에서 비교적 용이하게 검색 가능(p. 22~23 참조)



상표출원 절차

- 심사기간: 등록결정까지 약 1년 정도 소요되며, 기간이 단축되고 있음
- 상표출원 심사단계에서는 의견제출기회 없이 바로 거절결정!



중국의 일부 거절제도

- 한국에 없는 중국 특유의 거절제도로,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거절결정
- 일부거절결정 대응방안
 - **복심청구**: 일부 거절된 지정상품에 대하여 복심을 제기함과 동시에 심사 통과된 지정상품에 대하여 **분할출원**
분할출원은 바로 출원공고
 - **복심청구 후 포기할 경우**: 심판청구 기간(15일) 경과 후 심사 통과된 지정상품에 대해 출원공고됨
- **실무**: 복심청구기간이 거절결정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짧으므로, 먼저 복심청구**한 후에 상세이유서 등은 **보충기간(3개월)**에 제출



이의신청 제도

이의신청 제도의 활용

- 이의신청: 출원 공고된 상표출원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가 일정한 사유를 들어 심사관에게 거절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

이의신청인

- 절대적 거절이유에 대한 이의신청: 누구든지
- 상대적 거절이유에 대한 이의신청: 선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

- 절대적 거절이유: 식별력없는 표장,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표장
- 상대적 거절이유: 선행상표와 동일유사, 저명상표의 이익침해, 특정관계에 있는 타인의 악의적 등록, 선권리침해 등

이의신청 기간

출원공고 기간 내로서, 출원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이의신청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서 제출

- 출원공고 후 3개월 내
- 이의신청 후 3개월 내에 이유와 증거 보충

출원인 답변서 제출

- 이의신청서 부분 및 답변통지서를 출원인에 전달
- 출원인은 통지서 수령일 후 30일 내 답변서 제출
- 출원인에게 3개월의 보충증거자료 제출기간 부여

상표국 심사

- 12개월 이내에 등록허용여부 결정(6개월 연장 가능)

거절결정 or 등록결정

- 등록결정 시, 이의신청인은 불복 불가(무효심판청구)
- 이의 인정되어 거절결정 시, 출원인은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불사용취소신청 제도

- 상표권자가 등록받은 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 직권 또는 개인의 신청에 의해 해당 상표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불사용취소신청 절차

- 신청인: **누구든지**
- 대상
 - 상표권자가 등록 후 취소신청일까지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등록상표
 -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취소신청 모두 가능
- 취소신청 관할 관청: **상표국**

취소신청 수행 시 주의사항

- **상표사용 여부 입증책임**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짐
- **취소신청과 동시에 상표 출원해야!!**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취소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출원은 거절되므로, 취소신청과 함께 출원이 바람직
- **상표 사용·불사용 예시**

상표 사용	상표 불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를 상품, 상품포장, 용기, 라벨 등에 붙이거나 상품표지판, 제품설명서, 소개 매뉴얼, 가격표 등에 사용 • 상표를 상품판매와 관련이 있는 거래문서에 사용 • 상표를 방송, TV 등 매체에 사용하거나 출판물에 게재 • 상표를 전시회, 박람회에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된 상업 분야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증정품으로만 사용 • 실제 사용 없이 양도 또는 허가행위만 존재 • 상표 등록 유지만을 목적으로 한 상징적 사용 • 등록상표의 주요 부분 및 식별력을 변경한 경우

별첨

1. 중국의 4대 지재권 요약
2. KIPRIS를 통한 중국 전리검색
3. 중국 상표검색사이트에서 유사상표 검색

1. 중국의 4대 지재권 요약

구분	전리			상표
	발명 (发明)	실용신형 (实用新型)	외관설계 (外观设计)	
보호대상	물질, 물건, 방법	물건	제품의 외관디자인	상품 등에 대한 표장
출원료	기본 950RMB (청구항 10개) 추가 1항당 150RMB	기본 500RMB (청구항 10개) 추가 1항당 150RMB	500RMB	300RMB
실질심사 수행여부	실질심사 (实质审查)	형식심사(初步审查) * 단, 명백한 신규성(新颖性)에 대한 판단 수행		실질심사 (实质审查) 단, 심사단계에서 의견제출기회 없음
심사청구료	2,500RMB	-		
등록까지 심사기간	약 2~3년	약 8개월	약 4개월	약 12개월
등록료	1~3년 차 900RMB	1~3년 차 600RMB		없음
존속기간	출원일~20년	출원일~10년		등록일~10년 * 10년마다 갱신(续展)가능
중국 대리인 소요비용*	약 15,000RMB~	약 4,000RMB~	약 3,500RMB~	약 3,000RMB~

- **대리인 비용:** 발명전리의 경우 1차 거절통지서를 받고 등록까지의 비용
다른 권리의 경우 특허청에서 통지서 발행 없이 등록되는 경우의 비용
(대리인 비용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출원 전 전체 비용 견적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2. KIPRIS를 통한 중국 전리검색

- 검색 예제: 중국 전리번호 ZL201010104157.0의 공보 찾아보기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접속

<http://www.kipris.or.kr/>

'해외특허' 중국 클릭



스마트 검색 > 항목별 검색 클릭



'번호정보' 입력

※ 중국은 출원번호와 등록번호가 동일함



※ 출원번호에 번호 12자리 입력

결과화면에서 '공보' 클릭



- KIPRIS의 중국 디자인검색은 가능하지만, 중국 상표검색은 불가능
- 유사전리의 검색은 기술적인 전문성이 높아 출원인의 직접 활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

※
패턴

3. 중국 상표검색사이트에서 유사상표 검색

- 검색 예제: 포장 'venice', 상품류 18류인 경우의 검색

상표국 검색사이트 접속

http://sbj.saic.gov.cn

商标查询 클릭
상표검색



상표검색

我接受 클릭
동의함



商标查询 상표검색

使用说明 사용설명

本栏目为社会公众提供商标注册申请信息查询, 本系统的数据库信息并非实时更新, 有一定滞后性, 仅供参考不具有法律效力。

我接受 동의함

商标近似查询 클릭
유사 상표 검색



유사 상표 검색

상표 통합 검색



상품류, 언어선택, 검색어 입력

自动查询 选择查询

자동검색 선택검색

국제분류 18

검색어: venice

언어: 英文

검색: 查询

검색결과 확인 (유사한 순으로 표시됨)

순번	출원/등록번호	출원일자	상표명칭	출원인
序号	申请/注册号	申请日期	商标名称	申请人名称
1	2024292	1998年05月15日	VENICE	温州市瓯海康龙鞋业有限公司
2	G1133633	2012年11月03日	VENICE	DOSENBACH-OCHSNER AG SCHUHE UND SPORT
3	G1121577	2011年07月28日	VEVICE STREET & SPORTSWEAR	DOSENBACH-OCHSNER AG SCHUHC UND SPORT
4	G1192235	2014年02月15日	VENICE 1346	COOLAC HOLDINGS PTY LTD
5	22601551	2017年01月12日	V-ENICE RR	济南宝铂商贸有限公司
6	3048077	2001年12月24日	添丽BENICE	林冬峰
7	8532762	2010年08月02日	VENICF	意大利威尼斯国际皮具有限公司
8	12877759	2013年07月08日	FENICE	韩国恩美泰有限公司
9	10539828	2012年02月28日	迪尼斯 DENICE	刘六秀
10	21506800	2016年10月09日	ZENICE NATURELLE CHIC	杭州康又美科技有限公司

상표등록사항 확인(상표등록 제G1133633호)

VENICE

商品/服务: 非专用运动包和休闲包; 大衣箱和衣箱; 化妆箱; 学生书包和小书包; 钱袋; 钱夹; 皮革或人造皮革钥匙包; 手提包; 海滨浴场用手提袋; 购物袋; 帆布背包; 旅行包; 女用阳伞; 不属别类的皮革和人造皮革制品; 雨伞; 查看详情信息

类似群: 1801;1802;1804;

출원/등록번호: G1133633 | 申请日期: 2012年11月03日 | 国际分类: 18

출원인(중문): DOSENBACH-OCHSNER AG SCHUHE UND SPORT

출원인(영문): DOSENBACH-OCHSNER AG SCHUHE UND SPORT

출원주소(중문): ALLMENDSTRASSE 25,CH-8953 DIETIKON(SUISSE)

출원주소(영문): ALLMENDSTRASSE 25,CH-8953 DIETIKON(SUISSE)

1심 공고 번호: 등록공고번호

1심 공고 일자: 등록공고일

특허공고번호: 2012년08월06일

특허공고 일자: 2012년08월06일

상표공유여부: 否

상표유형: 一般

상표형식: 상표형식

우선권일자: 2012년08월06일

연구수행기관

특허법인 C&S, 중국 특허법인 중과(中科, CHINA SCIENCE)

※
내
판

발행처



특허청 특허청 국제협력과

● 이 책자의 전자파일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경로:홈페이지 접속-책자/통계-간행물-주요 발행물



특허청